

#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최정순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230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19년 12월 18일

발 의 자 : 최정순, 송명화, 이정인, 문장길,  
김인호, 성흠제, 임만균, 김광수,  
김정환, 노식래, 권수정, 박기열,  
김춘례, 김용석, 김기덕, 안광석,  
김혜련, 최웅식, 권영희, 이광성,  
최영주, 노승재, 강대호, 김화숙  
의원 (24명)

## 1. 제안 이유

- 현행 조례에는 정수처분 후 체납금을 완납하여야 정수처분을 해제할 수 있어 경제적으로 빈곤한 사회적 약자는 체납금을 납부하지 못해 장기간 수돗물을 공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, 정수처분 해제수수료를 부과함으로써 시민이 느끼는 심리적 압박감과 수수료를 미부과하는 추세에 따라 부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.

따라서 정수처분 해제 기준을 완화하여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정수처분 해제수수료를 미부과하도록 하여 시민의 심리적 압박감 및 부과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필요성이 있음.

## 2. 주요 골자

- 가. 정수처분 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금 완납이 어려운 수용가의 최소한의 생활권 보장을 위하여 정수처분 해제 기준을 완화함(안 제43조제3항).
- 나. 정수처분 해제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함(안 제43조제4항 및 제5항).

## 3. 참고 사항

- 가. 관련 법령 :
- 나. 예산 조치 :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
- 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##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3조제3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만,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정수처분을 해제할 수 있다.

제43조제3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“해제 수수료를 징수한다”를 “정수처분 사유가 수도요금 체납인 경우 가정용 외의 수용가에게는 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다”로 하며,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해제수수료, 보증금액”을 “보증금액”으로 한다.

1. 정수처분 해제 후 1개월 이내에 체납된 수도요금의 납부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2. 체납된 수도요금 중 시장이 정한 금액을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도 납부할 것으로 의사를 밝힌 경우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3조(정수처분) ① ~ ② (생략)</p> <p>③ 정수처분의 해제는 의무자의 신청에 따르되 정수처분의 원인이 해소된 후가 아니면 해제할 수 없다. <u>다만, 정수처분 해제 후 1개월 이내에 원인해소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〈신설〉</p> <p>④ 제3항에 따라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<u>해제수수료를 징수한다. 다만, 정수처분 사유가 수도요금 체납인 경우 가정용외의 수용가에게는 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다.</u></p> <p>⑤ 제4항에 따른 <u>해제수수료, 보증금액, 납부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u></p>	<p>제43조(정수처분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다만,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정수처분을 해제할 수 있다.</p> <p>1. 정수처분 해제 후 1개월 이내에 체납된 수도요금의 납부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</p> <p>2. 체납된 수도요금 중 시장이 정한 금액을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도 납부할 것으로 의사를 밝힌 경우</p> <p>④ ----- --- 정수처분 사유가 수도요금 체납인 경우 가정용 외의 수용가에게는 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다. 〈단서 삭제〉</p> <p>⑤ ----- 보증금액 ----- -----.</p>

##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# 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3조제3항은 정수처분 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금 완납이 어려운 수용가의 최소한의 생활권 보장을 위하여 정수처분 해제 기준을 완화하고, 안 제43조제4항 및 제5항은 정수처분 해제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개정함에 따라 세입감소 발생

#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

### 3. 미첨부 사유

가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인 경우(제3조제1항제1호)

나. 추계결과

- 총 비용 : 19,125천원(연 평균 3,825천원)

(단위 : 천원)

구 분	내용 및 조항	1차년도 (20년)	2차년도 (21년)	3차년도 (22년)	4차년도 (23년)	5차년도 (24년)	합 계
세입 감소	정수처분 해제수수료 미부과 (안 제43조제4항 및 제5항)	3,825	3,825	3,825	3,825	3,825	19,125
세 출	-	-	-	-	-	-	-
합 계		3,825	3,825	3,825	3,825	3,825	19,125

#### ○ 비용 추계 전제

- 상수도사업본부의 최근 5년간 정수처분 해제현황의 평균치를 향후 5년 일괄 적용하고 현황의 증감은 없는 것으로 가정

구 분	평 균	' 15	' 16	' 17	' 18	' 19.9	합 계
해제 건수	1,275	1,747	1,390	1,305	934	1,000	6,376

자료: 상수도본부 요금제도와

- 현행 해제수수료 3,000원을 적용하고 향후 수수료의 증감은 없는 것으로 가정
- 평균치의 소숫점 이하는 절사

○ 비용추계 산식

- 해제수수료(3,000원) × 건수(1,275건) = 3,825천원

- 연간 세입감소액(3,825천원) × 5년 = 19,125천원

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     예산정책담당관

담    당    관      남승우

예산분석팀장      정한섭

주    무    관      박경순

☎ 02-2180-7933

e-mail : kssunbi@seoul.go.kr